

주거복지센터 JPDC 청년인턴 공개모집 면접전형 계획 알림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센터 JPDC 청년인턴 공개모집과 관련하여
면접전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3월 25일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■ 면접전형 계획

- 대상인원: 원서접수자 전원
- 전형일시: 2022.04.02.(토)
 - ※ 채용사이트 내 응시표를 통해 개인별 참석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석장소: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A동 지원자 대기실
 - ※ (주소)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A동 1층
- 면접방법: 블라인드 면접, 다대다 면접
- 평가항목: 사고와 자세(20), 미래에 대한 열정(30), 조직·직무이해도 및 창의력(20),
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(20)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0)
- 합격자 선발: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, 나머지 절사)
- 동점자 선발: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다문화가정 → 북한이탈주민 순 선발
- 준비물: 제출서류,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
중 하나), 마스크

■ 서류제출: 면접전형(4/2) 참석 시 반드시 제출

제출서류	비고
<지원자 전원 필수 제출> · 주민등록초본 (주소지 이력 표시) ※ 청년(만34세 미만), 거주지 제한 확인 · 도내 고교 및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※ 거주지 제한 확인 · 재학·휴학·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※ 관련학과 확인 · 자격증 사본 (사회복지사, 주거복지사) ※ 관련자격 확인 <해당하는 경우 제출> ·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· (장애인) 장애인 사실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· (다문화가정) 가족관계증명서 ·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면접전형 참석 등록 시 제출

※ 제출서류로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판단하며, 제출서류의 미비, 누락 등으로 인한 부적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

※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아 제출

■ 향후일정

일정	일정	비고
04.02.(토)	면접전형 및 서류제출	
04.05.(화)	면접 결과 발표	
04.18.(월)	임용(예정)	임용일로부터 8개월 근무

※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모든 전형은 제주에서 실시되오니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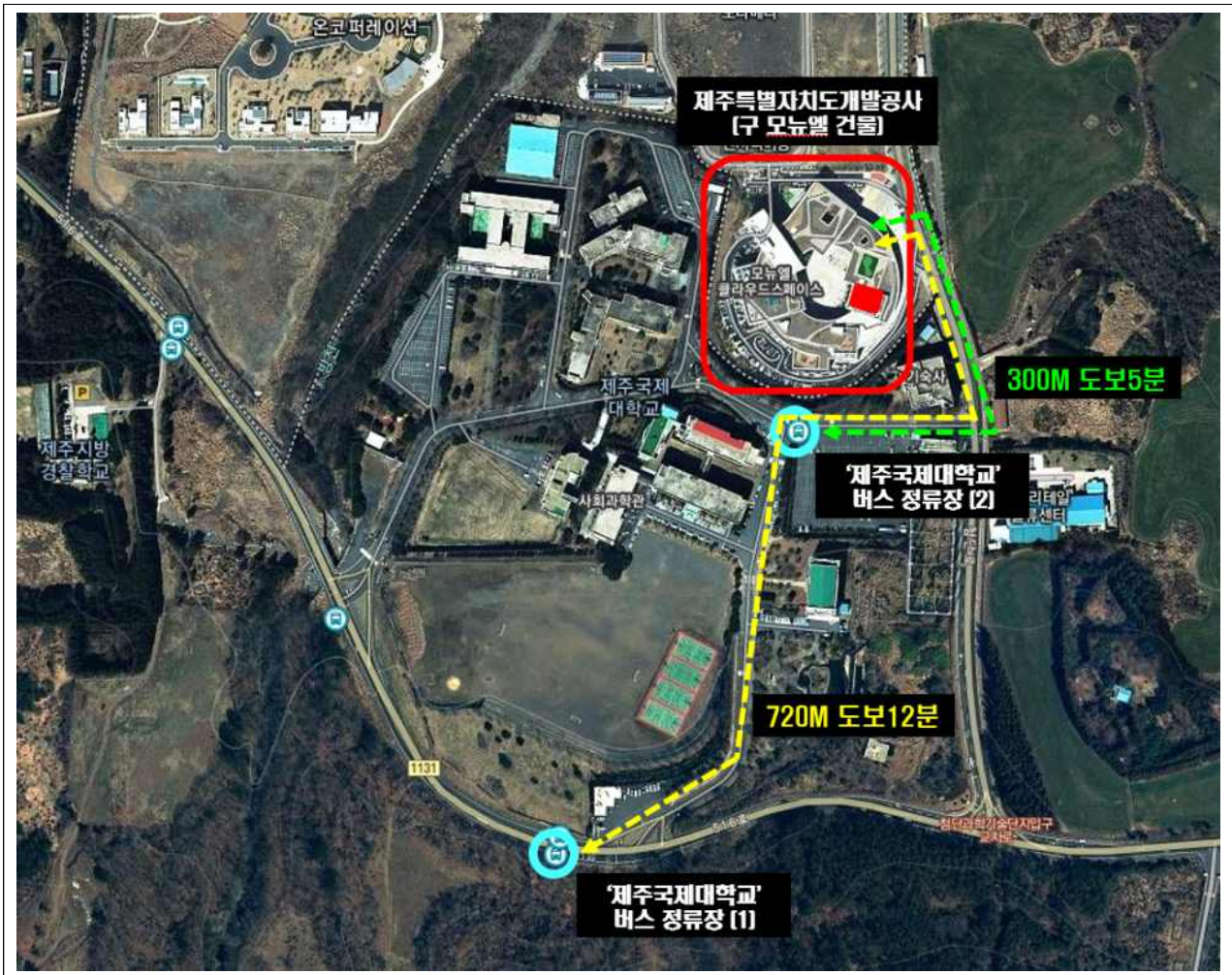
※ 전형별 공고 시 확정일정을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유의사항

- 서류 미제출 또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한 경우 면접 전형 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지정된 참석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참석시간 조정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급적 단정한 차림(정장 등)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면접 진행 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,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.
- <문의>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 (☎ 064-780-3514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
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□ 면접장소 약도



[붙임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